

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개정 대비표

■ 시행일자: 2019년03월26일

■ 등재위치: Home > 고객센터 > 자료실 > 상품공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제9조(수수료)</p> <p>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,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.</p> <p>② 수수료는 은행 영업점이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<u>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.</u></p>	<p>제9조(수수료)</p> <p>① (좌동)</p> <p>② 수수료는 은행 영업점이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<u>수수료(율)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.</u></p>	<p>17'1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준용</p>
<p>제 29조 (약관의 변경)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.</p> <p>② 은행이 제1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"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제 29조 (약관의 변경)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<u>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</u>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<u>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은행이 제1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"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</p>	<p>17'1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준용</p> <p>조항번호 변경</p>

	<p>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</p>	
<p>(신설)</p>	<p><u>부칙(2019.03.26)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시행일 추가</p>